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([]재부과 []정산부과 []환급 []반환) 통지

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8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
· 제28조제3항 · 제30조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· 제40조제2항 및 제41조
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([]재부과 []정산부과 []환급 []반환)함을
알려드립니다.

계	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	가산금	미 수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	[]재부과 []정산부과 []환 급 []반 환 해양생태계 보전 부담금	[]재 부과 []정 산부과 []환 급 []반 환 결정일자	[]수 납 []정 산부과 []환 급 []반 환 은행 및 계좌번호
(재부과 · 정산부과 · 환급 또는 반환) 사유						
납부통지서 발행번호						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
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
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